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내란 등 조장 정보의 유통방지〉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3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내란 등 조장 정보의 유통방지(안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2 신설 등) ...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3. 25.

다. 회 부 일 : 2025.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가 유포되어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나아가 폭동, 테러 등 선동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함.

또한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 조치와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75조의2).

Ⅲ. 검토의견

1. 내란 등 조장 정보의 유통방지(안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내란 등 조장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2 신설).
 - 내란 등 조장 정보를 유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란 등 조장 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얻은 수익 관련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안 제44조의11 신설).
- 내란 등 조장 정보를 유통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안 제74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9. (생략) ②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u>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u> 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u>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1항제7호, 제8호, 제8호의2 및 제9호</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u><신설></u>	④·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지급정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 2를 위반한 자가 해당 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얻은 수익 관련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급정지 조치 요구,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제74조(벌칙) ① ----- ----- -----

다. 검토사항

- 최근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가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고 혐오·폭동 등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허위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¹⁾,
내란, 폭동, 테러 등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내란 등 조장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란 등 정보 유통으로 획득한 수익 관련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내란 등 조장 정보 유통으로 획득한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의 각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6헌마275·606, 2019헌마199(병합)

□ 내란 등 조장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2
및 제74조 제3호의2)

○ 안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2 및 제74조 제3호의2는 내란 등 조장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²⁾에 포함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어떠한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을 명할 수 있게 됨³⁾.

-
- 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 첫째, ‘경제적·정치적 이익’ 및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개정에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내란, 폭동, 테러는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므로, 내란, 폭동, 테러 등을 조장하는 정보는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이미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함.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내란 등 조장 정보를 별도로 불법정보에 추가할 실익이 낮을 수 있음.

<내란·폭동·테러에 관한 처벌규정 예시>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
-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지정 요구를 하였을 것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지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란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고려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 모호하거나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범위, 판단기준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한국인터넷진흥원)는 개정안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 왜곡, 조작, 오인, 유도, 조장 등 불명확한 용어가 다수 사용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내란 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달리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다수⁴⁾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지급정지(안 제44조의11)

- 지급정지란 특정 범죄와 관련된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또는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하여 자금 은닉을 방지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상 지급정지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

4) 의안번호 제2200352호(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제2203370호(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와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법 공매도 등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임⁶⁾.

- 안 제44조의11은 내란 등 정보 유통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전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 폭동, 테러 등의 조장을 방지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 및 다른 불법정보의 경우와 비교할 때 내란 등 조장 정보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지급정지 제도는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며, 일명 ‘통장협박’ 사례⁷⁾와 같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함.

5)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7)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규정을 악용하여, 범죄와 무관한 사람에게 소액을 송금한 후 허위신고로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해제를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한 사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 경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두 건에 불과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다른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제도가 규정
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범죄행위의 중대성, 이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의 규모, 범죄
수익 은닉의 위험성 및 추적의 어려움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및 다른 불법정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정지 제도가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임을 고려할 때, 지급정지의 해제 등 후속 절차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절차 및 지급정지의 종료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⁸⁾,

8)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

「자본시장법」은 지급정지의 해제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⁹⁾.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급정지 제도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범죄와의 연관성, 피해 및 수익 규모, 지급정지의 시급성 등 지급정지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급정지 이의제기 및 종료 절차 등 계좌 명의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는 정보계재자를 특정하거나 이용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9) 제426조의2(지급정지)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3.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정보제공 등 협조사항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른 지급정지와 관련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범위¹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함.

□ 몰수·추징(안 제75조의2)

- ‘몰수’란 범죄의 반복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고,
‘추징’이란 몰수하여야 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말함.
- 안 제75조의2는 내란 등 조장 정보 유통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 폭동, 테러 등의 조장을 방지하려는 것임.

10)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다만 몰수는 징역형,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형의 일종으로,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¹¹⁾,
- 개정안과 같이 임의적 몰수를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¹²⁾.
- 방송통신위원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내란조장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범죄성이 명확히 규정된 후에 몰수·추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0

11)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2) 다만, 「형법」은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입법례와 같이 개별법상 벌칙으로 규정하여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